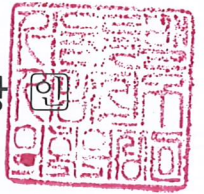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5-65호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5년 11월 10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



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42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11. 4.

발 의 자: 이 동 길 의원

1. 제정이유

경제적·심리적·신체적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
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태어난 아동이
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생명권
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사업(안 제3조 및 안 제4조)
- 다. 아동의 보호조치(안 제5조)
- 라. 민관단체 등의 지원 및 예산 확보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- 마. 민·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(안 제8조)
- 바. 개인정보, 홍보 및 표창(안 제9조~안 제11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
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

(참조: 의회사무국장, 전화: 02-450-2843, 팩스: 02-454-0438,
전자메일: kimda51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